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 제 1300 호 2021. 7. 22.(목)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65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66호[울산광역시 북구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 ..... 2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967호(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청과 구역획정 및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972호(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981호(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983호(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984호(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2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2, 행정7122)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165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천점용 허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문화체육과)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연암동)		
점용 위치	○ 신천동 745-118번지 일원	하천의 명칭	○ 매곡천
점용 내용	○ 벽화 설치 사업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몽골천막 설치)	점용 면적	○ 1,200m <sup>2</sup>
점용 기간	○ 2021. 7. 17. ~ 2021. 8. 20.		

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2021-166호

#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빈집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0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정비계획

나. 계획목적: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관리를 위한 빈집 정비계획 수립

다. 계획의 성격: 빈집 정비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라. 주요내용

- 1) 빈집실태조사 결과
- 2)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 3) 빈집정비계획
- 4) 빈집정비사업 재원조달계획
-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계획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1년, 목표연도 2025년
- 2) 공간적 범위: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실태조사 결과 빈집: 총 198호)

## 2. 빈집실태조사 결과

### 가. 빈집 등급별 현황

[단위:호, %]

구분	1등급(양호한집)		2등급(일반빈집)		3등급(불량빈집)		4등급(철거대상)		계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북구	51	25.8	66	33.3	37	18.7	44	22.2	198	100

### 나. 빈집 주택유형별 현황

[단위:호, %]

구분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그 외 주택		계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북구	125	63.1	13	6.6	28	14.1	32	16.2	198	100

### 다. 빈집정비계획 대상 빈집 현황

[단위 : 호,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계	
빈집실태조사에 따른 빈집(a)	52(26.3)	65(32.8)	37(18.7)	44(22.2)	198(100.0)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b) <sup>1)</sup>	1	1	2	5	9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c) <sup>2)</sup>	11	4	3	1	19	
지역주택조합사업(d)	-	1	1	1	3	
빈집정비계획 수립 대상 빈집 (a-b-c-d)	40(24.0)	59(35.3)	31(18.6)	37(22.4)	167(100.0)	
빈집정비계획 수립대상 빈집	예산지원대상	27(28.1)	29(30.2)	19(19.8)	21(21.9)	96(100.0)
	예산미지원대상 <sup>3)</sup>	24(23.5)	37(36.3)	18(17.6)	23(22.5)	102(100.0)

주1. 빈집 특별법 적용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함.

주2. 정비계획 중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해당 사업을 통해 빈집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므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함.

주3. 도시재생지역 내의 빈집의 경우 정비계획은 수립하되 정비사업 예산은 도시재생사업비로 충당함.

## 3. 빈집정비 기본방향

### 가. 빈집정비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1) 인문, 경제, 물리환경 등 개발여건 검토를 통한 맞춤형 계획 수립
- 2) 체계적인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
- 3) 빈집 활용가능성 검토를 통한 생활 SOC 공급 계획 수립

### 나. 정비 전략 : 개별단위 등급별 정비

- 1) 정비(관리) 방안 : 3·4등급 (철거 및 안전조치), 1·2등급 (안전관리)
- 2) 활용방안 : 3·4등급 (철거 후 공공용지 조성), 1·2등급 (리모델링 활용)

다. 빈집밀집구역지정 : 울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빈집의 밀집도가 낮으며 양호한 빈집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정 대상지를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개별 빈집 중심의 계획 수립

#### 4. 빈집정비계획

##### 가. 빈집 철거계획

- 1) 3·4등급 빈집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도로의 접면상태·대지면적·인근 주변의 공공시설 및 생활 SOC 시설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 2) 3·4등급 철거대상 빈집을 철거 우선순위로 하되 1·2등급 중 소유자의 철거 의사가 있는 빈집 대상설정

##### 나.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 1) 3·4등급 철거대상 빈집에 대해 철거가 불가능할 경우(소유자 미동의, 대상지 여건 등) 안전조치 시행(가림막 설치 등)
- 2) 1·2등급 빈집은 자발적 정비 유도(DM발송, 공급시설 폐쇄 등)

##### 다. 철거 및 리모델링 후 활용계획

- 1)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 운동시설, 쉼터 등)로 사용 동의하는 빈집 대상 철거비 및 공공용지 조성비 지원
- 2) 상태가 양호한 1·2등급 빈집을 대상으로 면적, 인근 주변의 공공시설 및 생활 SOC 시설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모델링 후 활용방안 제시

##### 라. 지역 맞춤형 활용계획

- 1) 이륜자동차 주차 공간
  - 지역 내 이륜차를 통한 출·퇴근 시민이 다수 존재
  - 주차장 조성 가능 빈집을 활용하여 이륜자동차 주차 공간 제공

#### 5. 재원조달계획

가. 빈집정비사업 소요사업비 추정(안)

(단위 :호, 천원)

사업내용		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비고
안전관리		비예산 (56호)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필요시 예산편성
안전 조치	호수	19	7	4	4	4	-	필요시 예산편성
	예산	38,000	14,000	8,000	8,000	8,000	-	동당 200만원
철거	호수	20	3	3	3	3	3	2021년후5호추가 (총 철거20호)
	예산	30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동당 2000만원
철거 후 활용	호수	15	3	3	3	3	3	
	예산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합계	총예산	438,000	94,000	88,000	88,000	88,000	80,000	

- 1)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거 “5차연도” 계획 수립
- 2) 4등급 철거대상 빈집 중 『2020년 빈집정비사업』으로 2호 철거되어 21호→19호로 변경됨
- 3) 정비사업 시행 시 소유자가 비동의할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소유자 동의여부, 대상지의 여건 등에 따라 철거대상 빈집 및 예산 조정가능

#### 나. 재원조달방안

- 1)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 2) 기타 예산 : LH토지비축사업, HUG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용자 지원 등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건축주택과(☎052-241-8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967호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개정 이유

- 중산매곡지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가 중산동·매곡동 2개 법정동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중산동 72필지(25,618㎡)를 매곡동으로 편입(안 별표 1, 별표 2)

####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11.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주민소통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주민소통담당관

- 전화번호 : 052-241-7264, 팩스번호 : 052-241-726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전문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농소1동 및 농소2동의 관할구역란 중 “942”를 각각 “942, 963, 963-1~963-71”로 한다.

별표 2의 7란 다음에 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중산동 57-2, 58, 59, 60-1, 61-1~4, 62, 63-1, 63-6, 63-12, 63-17~19, 66-2, 67, 67-1, 68, 69, 70-1~3, 71-1~7, 72, 72-1~2, 73, 73-1, 74, 74-1~2, 75, 75-2, 76-1~3, 77, 78-5, 81-2, 82-2, 82-4, 82-7, 83-2, 83-9, 83-12, 84-1~4 85, 86-1, 86-3, 86-5, 86-7~8, 86-13, 87-5, 87-8, 94-8, 95-2, 96-10, 1185-18, 1185-25, 1186-22, 1187번지(25,618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동 관할구역 개정연혁(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연번</th> <th style="width: 85%;">변경내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 7</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 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td> <td></td> </tr> </tbody> </table>	연번	변경내역	1 ~ 7	(생 략)	<신 설>		<p>[별표 2] 동 관할구역 개정연혁(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연번</th> <th style="width: 85%;">변경내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 7</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중산동 57-2, 58, 59, 60-1, 61-1~4, 62, 63-1, 63-6, 63-12, 63-17~19, 66-2, 67, 67-1, 68, 69, 70-1~3, 71-1~7, 72, 72-1~2, 73, 73-1, 74, 74-1~2, 75, 75-2, 76-1~3, 77, 78-5, 81-2, 82-2, 82-4, 82-7, 83-2, 83-9, 83-12, 84-1~4 85, 86-1, 86-3, 86-5, 86-7~8, 86-13, 87-5, 87-8, 94-8, 95-2, 96-10, 1185-18, 1185-25, 1186-22, 1187번지 (25,618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td> </tr> </tbody> </table>	연번	변경내역	1 ~ 7	(현행과같음)	8	중산동 57-2, 58, 59, 60-1, 61-1~4, 62, 63-1, 63-6, 63-12, 63-17~19, 66-2, 67, 67-1, 68, 69, 70-1~3, 71-1~7, 72, 72-1~2, 73, 73-1, 74, 74-1~2, 75, 75-2, 76-1~3, 77, 78-5, 81-2, 82-2, 82-4, 82-7, 83-2, 83-9, 83-12, 84-1~4 85, 86-1, 86-3, 86-5, 86-7~8, 86-13, 87-5, 87-8, 94-8, 95-2, 96-10, 1185-18, 1185-25, 1186-22, 1187번지 (25,618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연번	변경내역												
1 ~ 7	(생 략)												
<신 설>													
연번	변경내역												
1 ~ 7	(현행과같음)												
8	중산동 57-2, 58, 59, 60-1, 61-1~4, 62, 63-1, 63-6, 63-12, 63-17~19, 66-2, 67, 67-1, 68, 69, 70-1~3, 71-1~7, 72, 72-1~2, 73, 73-1, 74, 74-1~2, 75, 75-2, 76-1~3, 77, 78-5, 81-2, 82-2, 82-4, 82-7, 83-2, 83-9, 83-12, 84-1~4 85, 86-1, 86-3, 86-5, 86-7~8, 86-13, 87-5, 87-8, 94-8, 95-2, 96-10, 1185-18, 1185-25, 1186-22, 1187번지 (25,618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4조의2 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972호

## 울산광역시 복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다.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안 제7조)
- 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 ~ 제15조)

#### 3. 관계법령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 4. 입법문안 : 붙임 참조

##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경제일자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
- 2) 전화번호 : 052)241-7702, 팩스번호 : 052)241-7709
- 3) 전자우편(E-mail) : jina79@korea.kr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



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에 포함된 지번과 면적
6. 해당구역 안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

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2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사업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용도지역	
	규모	토지 면적:     m <sup>2</sup> ,    영업장 면적:     m <sup>2</sup>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구역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m <sup>2</sup> ,    기타:

「울산광역시 복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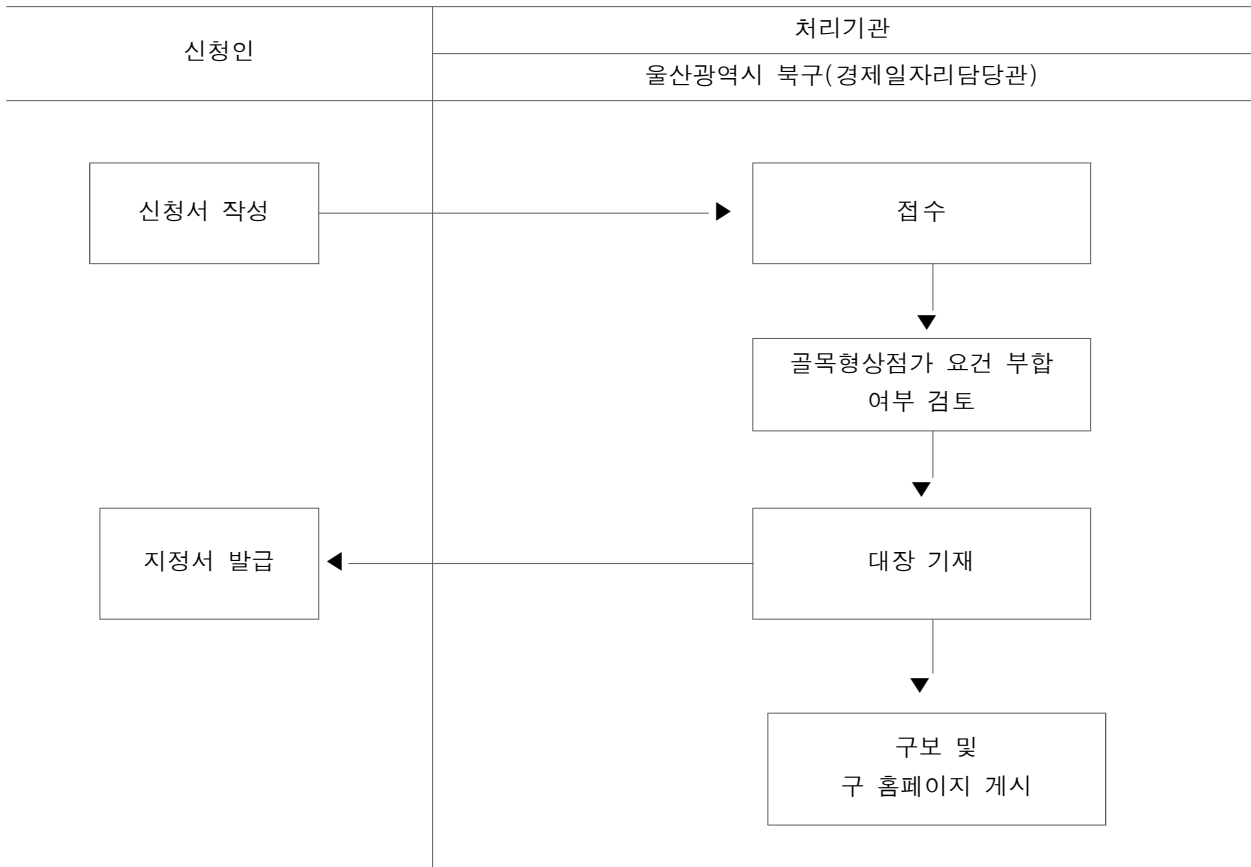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구역 안 상인 동의서</li> <li>2. 해당구역 안 토지소유자 동의서</li> <li>3. 해당구역 안 건축물소유자 동의서</li> <li>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li> <li>5. 해당구역에 포함된 지번과 면적</li> <li>6. 해당구역 안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li> </ol>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골목형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규모 : 토지 면적 m<sup>2</sup>, 점포수 개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 관계법령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조(정의)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865호

##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제3조 구성)

### 3. 근거법규

-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칙 제3조

###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8월 11일 18:00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경제일자리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제출방법

- 1) 전자우편 : [younga62@korea.kr](mailto:younga62@korea.kr)
- 2)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
- 3) 팩 스 : 052-241-760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052-241-77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0명”을 ‘30명’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p> <p>② · ③ (생 략)</p>	<p>제3조(구성) ① ----- ----- <u>30명</u>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관 계 법 령

###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제안하고 청년정책의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983호

## 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복구 평생학습관 개관으로 본격적인 평생교육 운영을 위하여 수강료 및 사용료의 감면, 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 등 조례 일부 신설 등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기준 신설(안 제16조의2)
- 나.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기준 신설(안 제16조의3)
- 다. 평생학습관 사용 제한기준 신설(안 제16조의4)

#### 3.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제7조, 제28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23조

####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8월 11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교육청소년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제출방법

- 1)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4, 북구청 교육청소년과
- 2) 팩 스 : 052-241-7399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교육청소년과(052-241-7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수절차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강사의 자격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징수절차와 강사의 자격”으로 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수강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8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라.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 3. 100분의 20 감면

- 가.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나. 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원

## 4. 100분의 5 감면

- 가.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희망자 중 구민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의3(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 및 사용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

③ 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전액 반환

-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나.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다. 사용 예정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2. 일부 반환 : 시설 사용 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남은 일수 사용료 반환

제16조의4(이용제한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제16조의3제1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6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 전액
제16조의3 제3호에 따른 반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시작 전	수강료 전액
		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시작 전	수강료 전액
		수강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수강시간"이란 프로그램 운영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한다.
2.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② (생 략)</p> <p>③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u>별표와 같다</u>.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④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u>징수절차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강사의 자격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u>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제1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별표 1과</u> ----- ----- -----.</p> <p>④ ----- <u>징수절차와 강사의 자격</u> ----- ----- ----- -----.</p>
<p><u>&lt;신 설&gt;</u></p>	<p>제16조의2(수강료 및 사용료의 감면)</p> <p>1. <u>100분의 80 감면</u></p> <p>가.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따른 <u>수급자</u></p> <p>나. 「<u>장애인 복지법</u>」에 따른 장애의 <u>정도가 심한 장애인</u></p> <p>다.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국가유공자와 유족</u></p> <p>라. 「<u>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5·18민주유공자와 유족</u></p> <p>2. <u>100분의 50 감면</u></p>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라.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 3. 100분의 20 감면

가.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  
봉사자증 소지자

나. 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다  
자녀 가구원

### 4. 100분의 5 감면

가.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희망자  
중 구민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  
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  
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16조의3(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  
준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평생학습관의 사정 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 및 사용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

③ 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다. 사용 예정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2. 일부 반환 : 시설 사용 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남은 일수 사용료 반환

〈신 설〉

제16조의4(이용제한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 <u>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u></li><li>2. <u>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u></li><li>3. <u>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u></li><li>4. <u>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li></ul> |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984호

## 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복구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평생학습관 명칭 및 위치 변경, 실무협의회 위원수 변경 등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평생학습관 명칭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10조~제15조, 제20조, 제21조)
- 나. 실무협의회 구성 인원 개정(안 제5조)
- 다. 평생학습관 위치 변경(안 제10조)
- 라. 강사의 자격기준 개정(안 제20조제2항제1호)

#### 3.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제7조, 제28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23조

####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8월 11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교육청소년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제출방법

- 1)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4, 북구청 교육청소년과
- 2) 팩 스 : 052-241-739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교육청소년과(052-241-7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평생교육센터”를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4조제3호 및 제4호 중 “평생교육센터”를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치) 평생학습관은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24(연암동)에 둔다.

제11조 본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고,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평생학습관에서 학습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복사 신청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4. 평생학습관에서 사용료를 수납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시설 등의 사용 취소 및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수강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교육센터”를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단체명		연 락 처	자 택:
	주 소			휴 대 폰:
사용목적 (행사명)				
사 용 시 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1. 냉난방 2. 빔 프로젝터 3. 기타( , )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참가예정인원	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 린 이 : 명, 계 명			

※ 수강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주소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 사 용 시 설 :
- 사 용 자 명 :
- 사 용 목 적 :

사 용 료 납부확인	영수증번호	납부일자	비고
	제 호	년 월 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 복사 신청서

일련 번호	신 청 자		자 료 명	복 사 용 지			금 액 (원)
	성 명	주 소		규격	단가	매수	
계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학습 자료를 복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청자	성명	연락처	자택 :
	주소		휴대폰 :
사용일시	사용장소		
납부한 사용료	금 원 (₩ )	사용료 납부일	
계좌입금 통장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반환신청 사유			

※ 수강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평생교육강좌 수강신청서				
접수번호		강좌명		
신청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 남, 여)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E-mail			
	문자서비스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수강료 감면 (증빙서 첨부)	면제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와 유족 <input type="checkbox"/>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	<input type="checkbox"/> 차상위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한부모 가정 <input type="checkbox"/>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100분의 20 감면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증 소지자(본인)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가구원		
	100분의 5 감면	<input type="checkbox"/>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희망자 중 구민		

※ 수강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주소, 연락처,계좌번호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u>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u>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	-----------------------------------------------------------------------------------------------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절 ----- 취 ----- 선 -----

수 강 증			
접수번호 : _____			
강좌명		개강일시	
성명		수강기간	~ (개월)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 남·여)	강의장소	
담당자	(전화 : _____)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별지 제8호서식]

<b>수강료 반환신청서</b>				
<b>수 강 생</b>	<b>강 좌 명</b>	<b>( 반 )</b>		
	<b>성 명</b>		<b>생 년 월 일</b>	<b>년 월 일</b>
	<b>주 소</b>		<b>연 락 처</b>	
<b>수 강 료</b>	금 원(₩ )			
<b>감 면 율</b>	100분의 [금 원(₩ )]			
<b>실제납부 수 강 료</b>	금 원(₩ )			
<b>계좌입금 통 장</b>	<b>거래은행</b>		<b>예 금 주 명</b>	
	<b>계좌번호</b>			
<b>반환신청 사 유</b>				

※ 수강료 반환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계좌번호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b>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b>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 학습관의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평생교육강좌 강의 참여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성별 :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자 택		E-mail	
		사무실			
휴대폰					
최 중 학 력	수 료 · 졸 업(전공분야 : )				
현 직/ 주 요 경 력	○ ○				
강 의 교 과 목	○ 강의과목 : ○ 강 좌 명 :				
희 망 강 의 료	○ 강의료 산출내역 : (근거 : )				
강 의 할 내 용	○ ○ ※ 강의 계획서는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강료 반환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최종학력, 경력	평생교육강좌 강의 참여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및 경력 조회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강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간의 협력 증진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북구 <u>평생교육센터</u>(이하 “<u>평생교육센터</u>”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3조(설치) ----- ----- ----- ----- <u>평생학습관</u> ----- <u>평생학습관</u>----- ----- ----- -----.</p>
<p>제4조(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협의·조정한다.</p> <p>1. · 2. (생략)</p> <p>3. <u>평생교육센터</u>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장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u>평생교육센터</u>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제4조(기능)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평생학습관</u> ----- -----</p> <p>4. ----- ----- <u>평생학습관</u> ----- -----</p>
<p>제5조(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p>	<p>제5조(구성) ----- ----- <u>30명</u> ----- ----- -----.</p>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장 <u>평생교육센터</u></p>	<p>제3장 <u>평생학습관</u></p>

제10조(위치) 평생교육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둔다.

제11조(운영시간)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대상) 평생교육센터의 시설 및 평생교육강좌의 이용대상자는 구 관내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자의 의무 등) ① 평생교육센터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평생교육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고,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평생교육센터에서 학습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사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복사 등 신

제10조(위치) 평생학습관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4(연암동)에 둔다.

제11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 -----  
-----  
-----  
-----  
-----  
-----.

제12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 ---  
-----  
-----  
-----  
-----.

제13조(이용자의 의무 등) ① 평생학습관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 등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고,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2. 평생교육센터에서 사용료를 수  
납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  
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의 목  
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③ 사용신청자가 납부한 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

2.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신청  
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른 교육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  
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평생학습관에서 학습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  
3호서식의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복사 등 신청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4. 평생학습관에서 사용료를 수  
납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취소 및  
반환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  
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에 따  
르고, 반환금은 반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에 따  
른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을 준용한다.

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에 따르고, 반환금은 반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수강료의 징수 및 납입) ①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강좌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평생교육강좌 접수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평생교육센터에서 수강료를 수납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강료의 징수 및 납입) ①

평생학습관-----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평생학습관-----

제16조(수강료의 감면) ① 수강료의 감면 대상 및 비율은 별표 2의 수강료 감면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p>② <u>수강료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u></p> <p>제17조(수강료의 반환) ① <u>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학생의 사망·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u></li> <li>2. <u>학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u></li> <li>3. <u>그 밖의 사유로 수강포기원을 제출한 경우</u></li> </ol> <p>② <u>제1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u></p> <p>③ <u>수강료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수강료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u></p>	<p>제17조(수강료의 반환) &lt;삭 제&gt;</p> <p>② <u>수강료</u> ----- ----- -----.</p> <p>③ ----- <u>별지 제8호서식</u> ----- ----- -----.</p>
<p>제20조(강사의 자격 등) ① <u>평생교육센터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u>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u></li> </ol>	<p>제20조(강사의 자격 등) ① <u>평생학습관</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li> </ol>

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센터 강좌운영에 필요하다  
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생교육센터 강사로 활동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5. (생략)

③ 강사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21조(강사의 모집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강사를 공개 모집 또는 추천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평생교육강좌 강의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강사로 위촉 받은 사람은 평생교육센터, 실무협의회 등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과 연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  
평생학습관 -----  
-----

② -----  
----- 평생학습관 -----  
-----.

1. 피성년후견인
2.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1조(강사의 모집 등) ① -----  
- 평생학습관-----  
-----  
-----  
----- 별지 제9호서식-----  
-----  
-----.

② 평생학습관 -----  
----- 평생학습관 -----  
-----  
----- 평생  
학습관 -----  
-----.

제23조(자원봉사의 신청 등) ① 평생교육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원봉사 희망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삭 제>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를 작성·비 치하여야 한다.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사용료 반환기준 (제14조제3항 관련)			<u>&lt;삭 제&gt;</u>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	과·오납을 확인한 날	과·오납된 사용료 전부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수강료 감면기준(제16조제1항 관련)			<삭 제>
구 분	대 상	비 고	
면 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 6급 장애인		
20% 감면	3)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구비 서류	1) 수강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증명서 ※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3] <b>수업료의 반환기준 (제17조제1항 관련)</b>		<u>&lt;삭 제&gt;</u>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	학기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학기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학기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학기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학기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학기 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 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학기는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학기를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 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b>강사수당 지급기준(제20조제3항 관련)</b> (단위 : 천원)		<u>&lt;삭 제&gt;</u>			
구 분	지 급 대 상	단 가		비고	
		기본료	초 과		
특별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현직 장·차관(급)</li> <li>전·현직 대학총장(급)</li> <li>전·현직 국회의원</li> <li>대기업체 대표 및 총수</li> <li>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인사</li> </ul>	1시간 300	초과 매시간당 200		
일반 강사	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li> <li>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li> <li>정부출연 연구기관장</li> <li>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li> <li>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li> <li>3급 이상 공무원</li> <li>컨설턴트(석사학위 이상 소지자)</li> <li>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기관의 연구원</li> <li>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사전협의)</li> </ul>	1시간 200	초과 매시간당 100	
	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li> <li>4·5급 공무원</li> <li>중소기업체 임원급</li> <li>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li> <li>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li> <li>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li> <li>원어민 어학강사</li> <li>특별강사 및 가급·다급을 제외한 강사</li> </ul>	1시간 150	초과 매시간당 70	
	다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임 이외의 외래 시간강사</li> <li>6급 이하 공무원</li> <li>외국어, 전산,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강사</li> <li>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사전협의)</li> </ul>	1시간 100	초과 매시간당 50	
그 밖의 (보조)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교육운영(실기 실습 등)보조강사 등</li> </ul>	1시간 50	초과 매시간당 20		
<p>※ 1. 실비보상금은 별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상기 지급대상에 적용하기 어려운 강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별도의 적용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교육인원(100명 이상)에 따른 강사료 할증지급 : 50% 이내                  3. 외국어, 전산, 체육 등의 강좌가 주1회 이상 강의로 1개월 이상인 경우 강사료 감액지급 : 50% 이내</p>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복사 등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												
일련 번호	신 청 자		자 료 명	복 사 용 지			금 액 (원)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자 택:							
	성 명	주 소		규격	단가	매수			주 소	휴 대 폰:									
								사 용 목 적 (행사명)											
								사 용 시 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1. 냉난방 2. 빔 프로젝터 3. 기타( , )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참가예정인원	일 반 : 명,	학 생 (중고생)		명,							
									어 린 이 : 명,	계		명,							
							※ 수강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30%;">수집항목</th> <th style="width:50%;">수집 목적</th> <th style="width:20%;">보유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td> <td>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td> <td>1년</td> </tr> </tbody> </table>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1년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학습 자료를 복사(인쇄)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복사 등 신청대장

일련 번호	복사 일자	신 청 자		자 료 명	복 사 용 지			금 액 (원)
		성 명	주 소		규격	단가	매수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사 용 시 설 :
- 사 용 자 명 :
- 사 용 목 적 :

사 용 료 납부확인	영수증번호	납부일자	비고
	제 호	년 월 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평생교육강좌 수강신청서(앞면)

접수번호	강좌명	
신청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년 월 일 (성별 : 남, 여)
	연락처	전화 : 이메일 :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센터의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절 취 ----- 선 -----

수 강 증			
접수번호 : _____			
강좌명	개강일시		
성명	수강기간		~ (개월)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년 월 일 (성별 : 남·여)	강의장소	
담당자	(전화 : _____)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구청장은 강좌의 내용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복사 신청대장

일련 번호	복사 일자	신 청 자		자 료 명	복 사 용 지			금 액 (원)
		성 명	주 소		규격	단가	매수	



현 행	개 정 안						
<p>(뒷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e0e0e0; margin-bottom: 10px;"> <p><b>평생교육강좌 수강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b></p> </div> <p>평생교육강좌 수강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p> <p><b>□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0%;">항목</th> <th style="width: 30%;">수집목적</th> <th style="width: 40%;">보유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전화, 이메일 - 법정대리인 성명</td> <td>- 수업안내(연락), 수강생 현황관리(출석)</td> <td style="text-align: center;">1년</td> </tr> </tbody> </table> <p>※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0px;">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p>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p>※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p> <p>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아니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0px;">             년    월    일         </p> <p style="margin-left: 100px;">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p>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전화, 이메일 - 법정대리인 성명	- 수업안내(연락), 수강생 현황관리(출석)	1년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전화, 이메일 - 법정대리인 성명	- 수업안내(연락), 수강생 현황관리(출석)	1년					

현 행						
[별지 제5호서식] 평생교육강좌 접수대장(                      강좌)						
연번	성 명	생 년 월 일 (주민등록상)	성별	주 소	연락처	비고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연 락 처	자 택 :
	주 소		휴대폰 :
사용일시	사 용 장 소		
납 부 한 사 용 료	금                      원정 (₩                      )	사 용 료 납 부 일	
계좌입금 통 장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반환신청 사유			
※ 수강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주소, 연락처,계좌번호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6호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5px;"> <b>수강료 감면신청서</b> </div>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r> <td style="width:10%;"></td> <td style="width:15%;">강좌명</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반 )</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수강생</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명</td> <td style="width:15%;"></td> <td style="width:15%;">생년월일 (주민등록상)</td> <td style="width:15%;">년 월 일 (성별 : 남·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소</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락처</td> <td></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r> <td style="width:10%;">수강료</td> <td style="width:15%;">금</td> <td style="width:15%;">원정 (₩ )</td> </tr> <tr> <td>감면률</td> <td>% [금</td> <td>원정 (₩ )]</td> </tr> <tr> <td>실제수강료</td> <td>금</td> <td>원정 (₩ )</td> </tr> </t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감면사유</p> </div> <p>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b>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b></p>		강좌명	( 반 )			수강생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년 월 일 (성별 : 남·여)	주소		연락처		수강료	금	원정 (₩ )	감면률	% [금	원정 (₩ )]	실제수강료	금	원정 (₩ )	<p>[별지 제6호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5px;"> <b>평생교육강좌 수강신청서</b> </div>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r> <td style="width:30%;">접수번호</td> <td style="width:20%;"></td> <td style="width:10%;">강좌명</td> <td style="width:40%;"></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r>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청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명</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소</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생년월일</td> <td colspan="2">년 월 일 (성별 : 남, 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락처</td> <td style="text-align: center;">자택 :</td> <td style="text-align: center;">휴대폰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E-mail</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문자서비스수신 여부</td> <td colspan="2"><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수강료 감면 (중빙서 첨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면제</td> <td><input type="checkbox"/> 수급자</td> <td><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td> </tr> <tr> <td></td> <td><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와 유족</td> <td><input type="checkbox"/> 5·18민주유공자와 유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분의 50 감면</td> <td><input type="checkbox"/> 차상위자</td> <td><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분의 20 감면</td> <td><input type="checkbox"/> 저소득 한부모 가정</td> <td><input type="checkbox"/>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분의 5 감면</td> <td><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증 소지자(본인)</td> <td><input type="checkbox"/> 다자녀 가구원</td> </tr> <tr> <td></td> <td></td> <td><input type="checkbox"/>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희망자 중 구민</td> <td></td> </tr> </table> <p>※ 수강신청을 위한 <b>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r> <td style="width:30%;">수집항목</td> <td style="width:40%;">수집 목적</td> <td style="width:30%;">보유기간</td> </tr> <tr> <td>성명,주소,생년월일 연락처,이메일</td> <td>평생교육강좌 수강신청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td> <td>1년</td> </tr> </table> <p>※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위와 같이 <b>개인정보를 수집·이용</b>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input type="checkbox"/> <b>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b>,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p> <p style="text-align: right;">본인 성명: (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법정대리인 성명: (서명)</p> </div> <p>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b>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b></p> <p style="text-align: center;">----- 절 취 ----- 선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수 강 증</p> <p>접수번호 : _____</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15%;">강좌명</td> <td style="width:35%;"></td> <td style="width:15%;">개강일시</td> <td style="width:3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명</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강기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 (개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생년월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성별 : 남·여)</td> <td style="text-align: center;">강의장소</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전 화 : _____)</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년 월 일 <b>울산광역시 북구청장</b></p> </div>	접수번호		강좌명		신청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 남, 여)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E-mail			문자서비스수신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수강료 감면 (중빙서 첨부)	면제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와 유족	<input type="checkbox"/>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	<input type="checkbox"/> 차상위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20 감면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한부모 가정	<input type="checkbox"/>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100분의 5 감면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증 소지자(본인)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가구원			<input type="checkbox"/>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희망자 중 구민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주소,생년월일 연락처,이메일	평생교육강좌 수강신청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1년	강좌명		개강일시		성명		수강기간	~ (개월)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 남·여)	강의장소		담당자	(전 화 : _____)		
	강좌명	( 반 )																																																																																								
수강생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년 월 일 (성별 : 남·여)																																																																																						
	주소		연락처																																																																																							
	수강료	금	원정 (₩ )																																																																																							
감면률	% [금	원정 (₩ )]																																																																																								
실제수강료	금	원정 (₩ )																																																																																								
접수번호		강좌명																																																																																								
신청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 남, 여)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E-mail																																																																																									
	문자서비스수신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수강료 감면 (중빙서 첨부)	면제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와 유족	<input type="checkbox"/>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	<input type="checkbox"/> 차상위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20 감면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한부모 가정	<input type="checkbox"/>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100분의 5 감면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증 소지자(본인)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가구원																																																																																							
		<input type="checkbox"/>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희망자 중 구민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주소,생년월일 연락처,이메일	평생교육강좌 수강신청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1년																																																																																								
강좌명		개강일시																																																																																								
성명		수강기간	~ (개월)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 남·여)	강의장소																																																																																								
담당자	(전 화 : _____)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b>수강료 반환신청서</b>					<b>평생교육강좌 접수대장(강좌)</b>						
수 강 생	강 좌 명	( 반 )			연 번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연 락 처	비 고
	성 명	생 년 월 일 (주민등록상)	년 월 일 (성별 : 남·여)								
	주 소	연 락 처									
수 강 료	금 원정 (₩ )										
감 면 율	% [금 원정 (₩ )]										
실제납부 수 강 료	금 원정 (₩ )										
계좌입금 통 장	거래은행	예 금 주 명									
	계좌번호										
반환신청 사 유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b>평생교육강좌 강의 참여 신청서</b>					<b>수강료 반환신청서</b>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년 월 일 (성별 : 남·여)	수 강 생	강 좌 명	( 반 )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 택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E-mail			수 강 료	금	원정 (₩ )								
	휴대폰				감 면 율	100분의 [금 원정 (₩ )]									
최 종 학 력	수 료 · 졸 업 (전공분야 : )				실제납부 수 강 료	금	원정 (₩ )								
현 직/ 주 요 경 력	수 료 · 졸 업 (전공분야 : )				계좌입금 통 장	거래은행		예 금 주 명							
강의 교과목	수 료 · 졸 업 (전공분야 : )				반환신청 사 유	계좌번호									
희망 강의료	수 료 · 졸 업 (전공분야 : )				※ 수강료 반환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강의할 내용	수 료 · 졸 업 (전공분야 : )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수집항목</th> <th style="width: 40%;">수집 목적</th> <th style="width: 30%;">보유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계좌번호</td> <td>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td> <td>1년</td> </tr> </tbody> </table>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계좌번호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1년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계좌번호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1년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센터의 강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_____(서명 또는 날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input type="checkbox"/>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 <b>자원봉사 희망신청서</b>	[별지 제9호서식] <b>평생교육강좌 강의 참여 신청서</b>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20%;">성 명 (단체명, 회원수)</td> <td style="width:20%;"></td> <td style="width:20%;">생 년 월 일 (주민등록상)</td> <td style="width:20%;">년 월 일 (성별 : 남·여)</td> </tr> <tr> <td>주 소</td> <td></td> <td>연 락 처 (전화, 휴대폰)</td> <td></td> </tr> <tr> <td>소 속 단 체 (직 장)</td> <td></td> <td>종 교</td> <td></td> </tr> <tr> <td>면허·자격증</td> <td></td> <td>직 업</td> <td></td> </tr> <tr> <td>자원봉사 활동경력 (교육이수 사항포함)</td> <td colspan="3"></td> </tr> <tr> <td>활동희망 내 용</td> <td colspan="3"></td> </tr> <tr> <td>활동가능 시 간</td> <td colspan="3"></td> </tr> <tr> <td>기 타</td> <td colspan="3"></td> </tr> </table>	성 명 (단체명, 회원수)		생 년 월 일 (주민등록상)	년 월 일 (성별 :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소 속 단 체 (직 장)		종 교		면허·자격증		직 업		자원봉사 활동경력 (교육이수 사항포함)				활동희망 내 용				활동가능 시 간				기 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3" style="width:10%;">신청자</td> <td style="width:15%;">성 명</td> <td style="width:20%;"></td> <td style="width:15%;">생 년 월 일</td> <td style="width:15%;">년 월 일 (성별 : 남·여)</td> </tr> <tr> <td>주 소</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연 락 처</td> <td>자 택 사무실 휴대폰</td> <td>E-mail</td> <td></td> </tr> <tr> <td colspan="2">최 종 학 력</td> <td colspan="3">수 료 · 졸 업(전공분야 : )</td> </tr> <tr> <td colspan="2">현 직/ 주 요 경 력</td> <td colspan="3">○ ○</td> </tr> <tr> <td colspan="2">강 의 교과목</td> <td colspan="3">○ 강의과목 : ○ 강 좌 명 :</td> </tr> <tr> <td colspan="2">희 망 강 의 료</td> <td colspan="3">○ 강의료 산출내역 : (근거 : )</td> </tr> <tr> <td colspan="2">강 의 할 내 용</td> <td colspan="3">○ ○ ※ 강의 계획서는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 수강료 반환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td> </tr> <tr> <td style="width:15%;">수집항목</td> <td colspan="2" style="width:40%;">수집 목적</td> <td colspan="2" style="width:25%;">보유기간</td> </tr> <tr> <td>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최종학력, 경력</td> <td colspan="2">평생교육강좌 강의 참여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및 경력 조회</td> <td colspan="2">1년</td> </tr> <tr> <td colspan="5">※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td> </tr> <tr> <td colspan="5"> <input type="checkbox"/>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td> </tr> <tr> <td colspan="5">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강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td> </tr> </table>	신청자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성별 : 남·여)	주 소				연 락 처	자 택 사무실 휴대폰	E-mail		최 종 학 력		수 료 · 졸 업(전공분야 : )			현 직/ 주 요 경 력		○ ○			강 의 교과목		○ 강의과목 : ○ 강 좌 명 :			희 망 강 의 료		○ 강의료 산출내역 : (근거 : )			강 의 할 내 용		○ ○ ※ 강의 계획서는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강료 반환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최종학력, 경력	평생교육강좌 강의 참여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및 경력 조회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강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성 명 (단체명, 회원수)		생 년 월 일 (주민등록상)	년 월 일 (성별 :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소 속 단 체 (직 장)		종 교																																																																																																													
면허·자격증		직 업																																																																																																													
자원봉사 활동경력 (교육이수 사항포함)																																																																																																															
활동희망 내 용																																																																																																															
활동가능 시 간																																																																																																															
기 타																																																																																																															
신청자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성별 : 남·여)																																																																																																											
	주 소																																																																																																														
	연 락 처	자 택 사무실 휴대폰	E-mail																																																																																																												
최 종 학 력		수 료 · 졸 업(전공분야 : )																																																																																																													
현 직/ 주 요 경 력		○ ○																																																																																																													
강 의 교과목		○ 강의과목 : ○ 강 좌 명 :																																																																																																													
희 망 강 의 료		○ 강의료 산출내역 : (근거 : )																																																																																																													
강 의 할 내 용		○ ○ ※ 강의 계획서는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강료 반환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최종학력, 경력	평생교육강좌 강의 참여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및 경력 조회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강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센터(평생교육강좌)의 자원봉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강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0호서식] <b>자원봉사자 관리카드</b>				<u>&lt;삭 제&gt;</u>			
성 명 (단체명,회원수)		생 년 월일 (주민등록상)	년 월 일 (성별 :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화,휴대폰)					
소 속 단 체 (직 장)		종 교					
면허·자격증		직 업					
자원봉사활동경력 (교육이수사항포함)							
활동희망 내용							
활동가능 시간							
봉사활동 내역	활동 일시	내 용		확 인			
(      년도)	~						
	~						
	~						
	~						
	~						
	~						
	~						
	~						
	~						
	~						